第29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2010年6月29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

1.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3.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4.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
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안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
27.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2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

정법률안

附議된案件

o 의원신상발언 ····· 3
1.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유성엽 의원 외 92인 발의) ····· 4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5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2.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 18
3.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황진하・권경석・김광림・김무성・김옥이・김장수・김충환・박진・유정현・정옥임・이해봉・조윤선・조진래 의원 발의) ····· 25
4.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6
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이계진・박병석・류근찬・노철래・송훈석・유성엽・최연희 의원 외 277인 발의) ····· 27
o 의사진행의 건 ····· 27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28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신영수・황우여・이상민・조배숙・정두언・김세연・김영우・손범규・주광덕 의원 발의) ····· 28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김혜성・노철래・정하균・신건・김정・송영선・김태원・윤상일・정영희・김을동 의원 발의) ····· 28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강창일・이성헌・박선숙・문학진・박주선・안규백・김우남・송민순・이미경・김재균・우윤근 의원 발의) ····· 28
10. 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두언・이해봉・정수성・임영호・이재선・김유정・김효재・강기갑・이인기 의원 발의) ····· 28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0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1
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32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2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3
1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34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충조・김희철・유정현・김소남・김유정・이범래・정수성・원유철・권경석・이인기・정갑윤・유성엽・안홍준・이한성・신영수 의원 발의) ····· 34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5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5
24.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발의)(박민식・김태원・

김낙성・이시종・김영우・이진복・원희룡・홍장표・정영희・김무성・김종률・안형환・홍정욱・손범규・김충조・신지호・안상수・여상규・현기환・이윤석・이종혁・정양석・이범래・허범도・허원제・박보환・이인기・권영진・최철국・박준선・조배숙 의원 발의) ····· 35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26.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27.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2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29.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3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3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3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39
o 5분자유발언 ····· 40

(14시35분 개의)

○의장 박희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가 이렇게 순항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o 의원신상발언

(14시37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 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공주 출신 심대평 의원입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본질이 실종된 채 세종시의 미래와 지역 주민의 운명이 예측불허가 된 상황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세종시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은 자족 기능이 배제된 원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기능을 백지화한 수정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지난 2월 4일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상생과 도약의 국민 통합 방안을 만들면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을 비롯한 500만 충청인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세종시의 충청인 자주결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성공 건설을 위해 충청인이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충정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충청인의 충정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충청인과 세종시는 지금까지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연기・공주 주민을 정치적 볼모로, 세종시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까?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벨트와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을 앞 다투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 수정안 명분 투쟁에 이어서 세종시의 실리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론 분열의 시발점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또다시 국론 분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가 또다시 원주민들의 피눈물

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세종시를 21세기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로 다듬기 위하여 대타협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는 물론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 건너갔다는 정부 입장은 협박이자 난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종시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자족기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 조정 그리고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에 필요한 법안 정비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산업을 융합시킨 자족기능 방안은 수정안이 아닌 세종시 원안의 기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기업 유치와 대학,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행정이 중심이 되어 과학·교육·산업을 융합한 과학수도 개념으로 건설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과학수도로 발전시켜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우선적인 이전 배치를 통해 정부의 진정성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국가 경영은 서울과 세종시 중심의 양 핵 구도로 가야 합니다. 서울은 외교·금융·경제 중심도시로, 세종시는 과학·교육·행정 중심도시로 차별화시켜 좁은 국토를 넓게 쓰자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시대적 당위성이자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요, 세종시의 본질인 것입니다.

갈등이란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것이 아닌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소되고 치유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도로 가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승부와 정략적 도구가 아닌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큰 틀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세종시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특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건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토론이니까 성격에 맞게 구분을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원내대표들께서 잘 검토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동규 의원 등 66인으로부터 세종시 관련 법안 4건에 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한 뒤에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왜 나는 안 줘요? 의장님, 신상발언 좀 주세요. 신청했지 않습니까?)

제안하실 의원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

1.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유성엽 의원 외 92인 발의)

(14시46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으셨네요.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박영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법사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구로 을 민주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이강래 의원, 강기갑 의원, 이용경 의원, 조승수 의원, 유성엽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장기간 불미스러운 향응을 받은 일부 검사들의 부조리한 형태를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국민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1999년부터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우리 국회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므로 법사위는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하여 법률안 제명에서 특정인 실명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을 "전·현직 검사들"로만 제한할 경우에 법원·경찰 등의 의혹 규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전·현직 공무원들"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대상에 2010년 6월 8일 주식회사 문화방송 PD수첩의 2차 방영분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 자금·향응 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섯째,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검사보를 5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수사기간을 45일에서 3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5인, 기권 19인으로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시53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임동규 의원 등 66인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33항으로 추가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3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폐기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임동규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동규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고 아울러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첨단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부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수도 이전과 수도 분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세종시의 탄생과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심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 결론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탄생된 잘못된 정책이다. 수도 분할이자 행정 비효율이 불러올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2%가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가 중대사인 세종시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되고 원안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딱 10년 후인 2020년에 가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혈세 수십조 원을 들여서 토지를 조성하고 행정타운을 짓고 도로에다 고속철도까지 건설해 놨더니 온다던 기업과 대학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덜렁 정부 건물 몇 개와 아파트만 세워져 있는 세종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행정타운은 자족기능은커녕 밤이면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되고, 혼자 내려와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주말이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느라 국내판 기러기아빠, 이산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과연 150㎞나 떨어진 세종시에서 며칠이나 생활하겠습니까? 국무회의다, 경제회의다, 국회 출석이다 해서 매일 같이 서울에 상주할 것이고 죄 없는 공무원들만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우리 정치인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충청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또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역사적으로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이 순간만은 지역과 정파를 떠나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충청지역의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고하시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의요구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죄송합니다. 아까 임동규 의원 등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부의요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1건에 대해서만 오늘 논의한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하고 여섯 번의 국제공모를 거쳐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효율성 차원을 뛰어넘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00년에 런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만 명이었습니다. 110년이 지난 지금 런던의 인구는 720만입니다. 110년

동안에 70만밖에 증가하지 않은 영국도, 런던도 수도권 집중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서울의 인구는 2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4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도권 집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하게 되면 앞으로 가까운 날에 서울은 숨쉬기도 어렵고 5㎞ 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땅값, 집값,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여건, 기업환경이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고 외국인투자가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기업들도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내려가면 관련 연구소와 기업도 함께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조금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조금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족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자족성 문제도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고 여섯 번의 국제공모를 거쳐서 모두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자족도를 6.7%라고 얘기합니다만 국제적으로 이런 통계를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설령 정부 통계를 그대로 쓰더라도 6.7%가 아니고 11.4%입니다. 이 비율은 신도시 평균 자족비율 8.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세종시 자족용지비율이 11.4%밖에 되지 않는 것은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녹지비율 53%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가 2006년에 작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을 보면 자족도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하면서 국제업무, 첨단산업, 연구·교육, 문화, 유통, 의료·복지, 친환경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족성이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면 공원녹지비율을 낮추고 자족성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시 원안을 폐기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세종시 문제를 충청도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종시를 수정안처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건설하게 되면 영남, 호남, 강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친환경사업, 이런 역점 사업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근접하고 세제금융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는 세종시에 투자하지, 어느 기업이 영호남에 투자하고 강원도에 투자하겠습니까?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공동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 행정과 정책에는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면, 매듭이 지어졌으면, 지켜 나가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녹색성장정책이나 광역경제권사업 등을 모두 뒤집어 버리면 그 혼란과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종시를 낳은 것은 참여정부지만 이제 키우는 역할은 이명박 정부가 해 주셔야 됩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잘 발전시켜 놓으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전국 방방곡곡이 지방마다 각자 특성을 갖추어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議員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입니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 상임위 부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표심을 무시한 오기 정치가 아니냐는 등의 많은 비판이 있

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또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부담과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위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 대단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또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원안 찬성률보다 크게 앞섰음에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에 근거한 논쟁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진행되지 못하고 안락사당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국가의 중대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파적 이해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특정 계파나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와 국익을 고려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종시 수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미를 봤던 포퓰리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특별법은 수도 이전 문제가 헌재의 결정으로 무산된 것을 행정복합도시라는 편법을 통하여 구현하려 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돈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한 행정기관이 원안대로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겨만 가면 세종시는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 호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옛 고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사욕이라 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행정부를 분할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함에도 유령도시가 될 게 뻔한 세종시 원안을 약속이란 명분으로 선택한 의원들께서는 그 사욕에 사로잡혀 세종시 유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보다 훨씬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년까지로 10년이 단축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기업 유치로 고용인원 수도 20만 명 정도로 대폭 증가되며 그 투자 규모도 원안의 2배로 늘어나 충청권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는 수정안은 오히려 타 지역민이 역차별을 느낄 정도입니다.

순환고속도로의 경우는 중심은 2년 단축, 외곽은 15년 단축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갖 특혜를 부여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 애타게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하고 세종시 유령을 자처하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과 지원 등 플러스알파를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종시 원안으로 다 된다며 원안에서 손끝 하나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무책임하게 선동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에 대한 판결처럼 약속된 것은 가져갈 수 있지만 약속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더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샤일록에게 내리는 판결이라면 과연 충청도민들에게는 무엇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선거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국민 과반수 이상은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오직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설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과를 빚더라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며 현명한 판단과 함께 당당하게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열 달 동안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입니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 인구가 700만이던 시절에 앞으로 900만, 1000만,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역대 정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안에 이미 자족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국민 정부의 실천 의지인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국력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 비효율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모두가 애국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안보 문제,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오늘 결론이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세요.

○권성동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둔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세종시 자체는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웠을 때부터 충청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여론은 수도 분할을 반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시 원안을 마치 신탁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수도 분할에 대하여 국민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도 반대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변칙적인 대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당시 여야는 이전 부처를 축소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세종시 원안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당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 아래 충청권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라당의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애초부터 수도 분할에 대한 명분은 빈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균형발전은 어떻습니까?

이미 충청지역에는 대덕연구단지, 천안산업단지, 아산탕정지구 등이 있으며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서울에서 300～400㎞ 떨어지거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강원도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너 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가야 공무원들이 서울에 집을 둔 채 출퇴근하지 못하고 아예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 인구가 분산되고 국토가 진정 균형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주말부부 양산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원안 사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수라…… 세종시 원안이 과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분들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의 표입니까?

정치란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치란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만 받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애초 정략으로 탄생하고 야합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세운 원칙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세종시 원안 사수를 세종시 교조주의(敎條主義)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교조주의, 정치적 도그마는 의회정치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독선과 맹신에는, 대화와 토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세종시와 충청도민이 정치적 교조주의의 볼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대선 당시 표를 의식한 원안 추진 약속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세종시법 수정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정부에 박수를 쳐 주며 용기를 북돋워 줄 아량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만일 세종시 안을 현 정부가 내놨다면 충청권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행정 비효율화를 외치며 수도 분할 반대를 그야말로 사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라고 적극 지지해 주셨겠습니까?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절대 선은 무엇이고 절대 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소속 정당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세종시 교조주의를 벗어나 국가 전체를 위하여, 또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 세종시 수정안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안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시대를 넘어 지

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의 중추기능인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기능인 행정기능을 쏙 빼놓고 세종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령도시 운운과 플러스 알파 없음의 주장은 국민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이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두 번에 걸친 심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가 정책입니다.

또한 수정안은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은 법안이며 불과 일주일 전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18 대 12로 부결된 정책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려 20여 차례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양치기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안입니다. 평당 227만 원의 땅을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기업에게 준다면 그 차액인 평당 187만 원에서 191만 원의 손실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걷어야 할 세금을 안 받고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까지 준다면 이 돈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땅값으로 인해 7, 8조 원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됩니다.

넷째, 세종시 수정안은 전국의 각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을 세종시로 입주시켜 세종시가 지방을 죽이는 블랙홀로 만드는 안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업가라면 평당 36만 원의 땅으로 기업을 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당 200～300만 원 땅으로 기업을 이전하시겠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에게 평당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제공되지만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인 울산은 297만 원으로 세종시에 비해 8배나 높은 가격이고 대구 285만 원, 강원 193만 원, 경남 172만 원 정도로 토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도시에 가려고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릴 것입니다.

다섯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지방과 지방의 대결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집권 여당을 분열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정운찬 총리 지명 이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언제 한번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케 하며 국민 혈세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지방을 죽이는 블랙홀로 만들며 국론분열의 장본인인 세종시 수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다면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은 2개의 심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밀화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21세기에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심장이 될 수도 서울과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국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심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개의 심장을 가진 듯이 90분간 줄기차게 뛰고 뛴 박지성 선수가 2002년에 대한민국을 4강에, 2010년에 원정 첫 16강을 이끌었습니다. 2개의 심장인 수도 서울과 세종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 4강으로 이끌 것이며, 서울과 지방 16개 시·도가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 수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 갑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가 존재하는 과천시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전국의 2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천시에 사는 것에 만족하느냐?' '만족한다'는 대답이 무려 94%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것이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68%였습니다.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들은 불과 4.1%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기업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공무원만 느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일자리도 많이 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30조 원 이상을 공공 발주를 하는 조달청·특허청,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 청사는 '대전 속의 외딴섬'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연간 30조 원 이상 되는 발주를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경우 전국에 등록된 인원이 4000명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은 전체 인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여 명 수준입니다.

세종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의 표심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하는 이런 선거 포퓰리즘에서 나온 산물이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DJP 연합 같은 세력 연합이 가능치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이라 하는 공약을 통해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고자 이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2012년, 2년 반 후에 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고수될 경우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에는 누군가가, 충청권의 표심을 좀더 자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누가 누가 더 잘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가끔 논합니다. 그러나 시장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이제 끊을 때가 됐습니다. 역사는 이 세종시 문제를 민주주의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우리 후손에게, 우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근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서천·보령, 보령·서천 출신입니다.

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6월 국회 막바지에 우리 국회가 지금 '봉숭아학당'보다도 더 지독한 '코미디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이 60명이 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지금 2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표결을 해보겠다고 찬반토론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법률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는 저를 포함한 10여 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코미디에 가담하고 있고 또 그게 끝나면 표결하겠다고 넋 놓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코미디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충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자랐다는 말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치렀던 6·2 지방선거에서의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벌써 깨끗이 잊었다는 말씀입니까?

세종시 문제를 혼란스럽게 한 원죄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원안 추진이 국민적 여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망선고를 받은 세종시 수정안의 망령을 되살려 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말인지 답답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나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고 만용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기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입에 발린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세종시 문제로 야기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세종시 원안 추진을 확약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물어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일에 깊이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모두 해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역사 운운하면서 지금 자존심 싸움을 걸어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원안의 본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공정의 4분의 1이 진척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5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로 뒤흔든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저지른 큰 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석고대죄는커녕 무비판적인 추종 세력들을 동원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를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 똑똑히 기록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오기로 똘똘 뭉쳐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희화화시켰을 때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로 국가 발전이 지체되고 국론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겠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 결론을 내야 합니다.

마땅히 이 수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종시 수정법안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어떤 기도도 그것은 오기이자 꼼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분명히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립니다.

세종시 수정법률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8년간 소모적 정쟁의 소재로 변질되어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8년간 이 문제를 두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

회가 이를 상임위의 결정에 떠넘기는 것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회피하고, 국회의 권능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법의 본회의 처리는 역사 앞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소명을 다하는 대한민국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이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작게는 충청권의 발전을, 크게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입주와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과 대학들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대로 갈 경우 사업부지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충청도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들은 원안대로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 수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알파'를 추가로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에 이어 수정안이 담고 있는 각종 혜택이 더해지면 영호남을 비롯한 다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과 타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안이 담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협박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정안이 국가 백년대계와 충청권 발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원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국회는 그동안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충청권과 타 지역 간의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원안의 소신을 갖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담긴 이른바 '알파'까지 원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서 수정안에 담긴 인센티브 같은 것이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셔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성숙한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국가·역사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미래 대한민국의 빛나는 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혜 기업도시로 변질된 교육과학중심도시, 일명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입니다. 수년간의 국민 토론을 거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추진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루아침에 특혜 기업도시로 바꾸려는 이 같은 시도는 청와대에 의한 여당의 횡포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국책사업입니다.

특히나 이번 6월 국토해양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민주적 국회 운영과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 선언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우리나라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수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해서 9부 2처 2청의 중앙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핵심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원안을 전면 부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이라기보다는 대체 입법과 같은 그런 안입니다.

더 나아가 개정안은 상식적인 국민 정서와 법 원칙에 반하는 특혜 기업도시법입니다. 원안 플러스알파가 결코 아니라 원안을 전면 부정하는 안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토지 원가의 5분의 1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각

종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특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급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용지인 학교용지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특혜가 많은 것은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서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사라진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빨리 내려니까 기업에게 막대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시는 기업 특혜로 점철된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되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주·천안·나주 등 인구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족기능이 낮지도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약한 이런 주장은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특혜 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세종시에 대한 무모한 자기 소신의 옳음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끗이 승복하셔야 합니다. 6·2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을 알아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십시오. 국민에 맞서 국민의 뜻보다 대통령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제2의 심판이 덮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국회가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판 지을 수도 분할 현실에 맞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충청권 지지율 10%대에 머물러 있던 노무현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충청권 수도 이전을 공약하며 대선에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재미봤다”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강행된 수도 이전법은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야 할 수도 이전 논란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 분할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결정적 힘을 발휘하는 충청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선택이었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차라리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은 상대 당의 공세로 표를 못 얻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충청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좀더 솔직해집시다.

과연 세종시로 9부 2처 2청이 내려가면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됩니까? 50만 인구로 2000만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역 발전이 자족성에 충분하다면 왜 플러스알파를 주장합니까?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쪼개야 되는 것이라면 왜 꼭 충청도라야 됩니까? 그 논리라면 오히려 강원도나 제주도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이 되면 수도를 셋으로 쪼개시겠습니까?

정부의 세종시 발전안은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난 상태라 지금 바로잡으면 추후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5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주민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 공정의 4분의 1,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쓰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뒤집어야 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감수했습니다.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분할보다는 지역 자족성과 인구 분산, 발전에 의한 균형을 실현시킬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도시 이전 공약을 사과했고, 정부는 실질적인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투자유치, 자족 용지와 고용인구 확대를 발전안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충청도 분들은 약속을 어겼다고 분개하셨고, 다른 지역 분들은 충청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고 김대중 대통령도 옥중 편지에서 수도 이전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역설한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분할에는 반대했습니다.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 이전을 주창하면서 왜 선진당 당사는 서울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총재님도 2002년 대선 때 수도 이전이 아닌 과학도시 건설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2002년 이후 당내에서 수도 이전, 수도 분할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중앙부처는 수도 중심부 반경 1~2㎞ 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적인 시점 이후에 대한민국 수도는 반으로 갈립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총리는 충청도로 갑니다. 핵심 경제부처 모두 충청도로 갑니다.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총성 없는 치열한 국제 경제전의 시대에 국정을 긴밀히 협의해야 될 대통령·총리·경제부처를 떼어 놓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어야 하겠습니까?

세종시 여론은 아직도 수정안 52%, 원안 39%의 지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부의가 옳은 선택인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오기 정치라는 냉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과반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될 소명과 도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선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후손들의 미래가 정치권의 이해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단견적 정치공학에만 매몰돼서 수도를 나눈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공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구 분산,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표라면 세종시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만 생각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 대덕구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 순서를 기다리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정운찬 총리가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던 날 저희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사당 본청 앞의 계단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최근 저를 만나는 동료 의원 분들께서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제대로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 두발도 정상화됐듯이 세종시 문제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인데 그것을 어기고 '본회의를 통해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달라'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 기회를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오매불망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에 따라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본회의의 속기록은 국가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그 행간에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했던 권력이 끝내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기록할 것입니다.

중국 당 태종의 정관정요에 보면 '백성은 물, 군주는 배와 같다. 물은 배를 띄워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충청인과 국민의 뜻은 세종시 수정안의 명백한 거부입니다. 말하자면 세종시 수정안을 전복시킨 것입니다. 민심을 어기고 아집에 빠진 권력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표는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여 주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잠시 후 진행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줄 세우기 표결을 상상하면서 참으로 측은지심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은 당장 떨쳐 버리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지난번 민주당이 청원군 2개 면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빨리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조세 감면, 원형지 공급 등 이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언명한 정운찬 총리는 오늘 이 안의 부결과 동시에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민의를 무겁고 그리고 두렵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18대 국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의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MB를 심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기 전에 행정도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열 번이 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행정도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경제과학도시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MB를 심판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죄 중의 죄라는 것 아주 아프게 알려 주셨습니다.

한나라당도 심판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명박 정권 출범의 한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왜 그때 MB를 말리지 못했을까, 정말 나는 수도 분할이 큰일 날 정책이라는 것 몰랐단 말인가, 내가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함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심판받았어야 한다, 알았다면 표에 눈이 어두워 국가 백년대계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바로 그 이유로 나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

역시 이번 선거 한나라당 참패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인정합니다. MB와 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약속 위반이라는 레드카드를 우리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오늘로 끝날까요? 장담컨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판,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심판,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원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고스란히 현실화 될 것입니다. 수도가 분할돼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 엄청난 행정 비효율의 문제, 수도가 둘로 쪼개져 국가경쟁력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킬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5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야심찬 계획, 역시 인구분산 효과는커녕 행정기관만 퀭하니 들어선 삭막한 유령도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했지만 이 원안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잘못된 포퓰리즘에 대한 실패의 사례로 기억할 것입니다. 원안을 주장한 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책에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시는 동료, 선배님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행정도시로 가는 원안, 나쁜 정책이라는 것, 경제과학도시가 실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원안을 찬성해 온 지금까지의 관성, 그리고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만을 남겨 놓고 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 찬성하시는 분들, 일거양득이 됩니다.

약속 위반의 굴레를 저희 수정안 지지자들이 다 안고 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 원안 추진자가 앞으로 안게 될 엄청난 부담, 수도 분할과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담, 후대의 심판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의 충정 어린 권고,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 이회창 대표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 박근혜 전 대표님!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 참으로 아픕디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그릇되게 한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16시05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존경하는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동성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 을 출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3월 26일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수행 중 침몰되면서 고귀한 우리 해군장병 46인이 희생되는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긴밀한 국제공조 속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수의 국제 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 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 의회를 비롯한 EU 의회 등 국제사회는 속속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여 국제 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록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을 대표하여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행위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군의 초기대응과 보고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상같은 추궁과 처벌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결의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학용 의원, 유원일 의원, 유성엽 의원 외 8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계양갑구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해군 천안함과 우리 장병들이 수장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답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배제된 채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안보 무능, 초동대응 실패,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민망할 정도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해 국민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장관 해임,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4월 28일 국회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단 두 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열렸을 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도 최종 발표가 아닌 중간 발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른바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 진상 규명, 후 대북결의안 채택은 지극히 순리적 절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 해소의 핵심적인 물건인 천안함 가스터빈실은 조사결과 발표 5일 전에야 겨우 수거되었고 또한 증거물인 북한 어뢰 파편도 조사 결과 발표 직전에야 수거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으나 전통적인 서방진영국가들의 동의만 얻었을 뿐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는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의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 3당 및 유성엽 의원 등 84인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가득 찬 대북규탄결의안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의원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을 규탄하자는 데 토론에 나서는 게,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또 며칠간 일을 못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 방의 전화, 인터넷 마비가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천안함에 대한,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의 하나로 제 생각을 여기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섰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스무 가지가 넘는 의문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싶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러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정부가

양치기소년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앞으로 국민들이 못 믿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문제 제기에 당시 아예 무시하거나 또 하나는 답변하기는 하는데 극히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거나 아니면 그냥 믿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믿으라, 그냥 믿지 않으면 애국심이 아니다, 그냥 믿지 않으면 빨갱이다, 제가 최근에 친북인명사전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좌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같이 17대 원내대표 같이하신 안상수 의원님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제가 좌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오늘 반대토론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대의를 얘기하고 명분 이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반대하는 이유는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을 하든 규탄을 하든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중간발표라고 그랬습니다. 7월 10일 날 최후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감사원의 이번 감사 조사결과 발표도 1차 조사결과 발표입니다.

국회는 그 안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지만, 4월 28일 특위를 만들었어요. 저는 특위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특위가 무엇을 하는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국회가 뭐 했습니까? 딱 두 번 회의 했잖아요. 4월 28일 날 특위 구성해 가지고 5월 27일 날 딱 한 번 회의 하고, 그다음에 6월 11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 가지고 회의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국회가 그냥 국회도 정부의 발표만 따라가자, 국회도 잘못하면 좌빨로 몰리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규탄성명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저는 규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규탄 결의를 아무리 한들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북한에 욕 한 번 하고 규탄 결의하는 것 정도로 끝내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정말 사실 북한이 했다고 한다면 훨씬 강력한 응징과 대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이런 규탄결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우선은 국정조사를 바로 합시다. 우리가 특위 활동을 했지만 국정조사가 아니고는 국회가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국정조사 수용해서 진실을 밝혀냅시다.

그다음에 천안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그만둡시다.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부에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조사단이 지금 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받아들입시다. 그것을 왜, 북한조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내용을,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안함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한반도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물론 국정기조 전체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문제만큼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한반도에서 체제 경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잘 관리해 내서 통일을 이루어 가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결국은 북한과

정면 대결로 가지 말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좀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님 인사하고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과 84명의 의원님들께서 내신 수정안 모두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그야말로 전쟁 책동 촉구 결의안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과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커져 갔고, 국회에서 또 천안함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주한 미대사관에게는 251쪽짜리 천안함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우리 국회에는 정보 제공과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한나라당 또한 정부의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천안함진상규명특위는 두 달 동안 두 차례 회의에 그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침몰 직전 동영상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엄연히 존재하는 동영상이 편집되고 은폐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100m 물기둥을 봤다던 초병 증언이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판명났으며, 생존자 누구도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난 지금 국회에서 취해야 할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은폐하는 김태영 장관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파면과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어야 합니다.

대북 제재가 필요하고, 또 국회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천안함 진실이 규명되어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민 다수가 공감할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유엔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해 놓고 국민적 공감대도, 공의도 전제되지 않은 대북 제재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섣부른 국제외교의 실패를 국회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지 않고 정부 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흡한 정부 발표를 토대로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의 기조야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라 이해를 하더라도 국회가 나서서 미흡하고 의혹투성이인 정부 발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발표한 이들에게 면피의 단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의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전쟁의 공포를 경험하고 다시는 한반도 내에 전쟁을 바라지 않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비극적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을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실을 근거로 국회가 나서 대북 대응조치를 압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중심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우리 국민은 한반도 평화를 원합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적 경제협력, 인도적 대북 지원이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적대적 행위를 중단시킬 것과 6·15 선언 및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복원을 촉구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전쟁을 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전쟁 선동 국회로 낙인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과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후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국가를 전쟁

으로 몰아가 파괴시킨 국회의원들로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민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대북 결의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해 주십시오.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국회로 거듭나 전쟁 공포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천안함 사고는 진실 규명이 우선입니다. 대북 제재는 진실에 근거하고 국민적 동의에 전제한 응분의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홍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평 을 홍영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침몰하여 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4월 28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의 특위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사건 발생 59일 만인 지난 5월 24일에야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민군합동조사단은 어뢰 설계도가 CHT-02D가 아니라 다른 북한산 어뢰인 PT-97W이며 이것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북 잠수함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 업무 부실, 허위·지연 보고와 문서 조작,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 무능을 분명하게 밝혀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는 등 국회 천안함특위 활동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천안함특위는 6월 11일 감사원 감사 관련 회의 1회 등 단 2회의 전체회의만 개회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응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여 대내·외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국가안보태세 강화 등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천안함특위는 한나라당의 책임 회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엔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으나 서방 진영 국가들의 동의만 있을 뿐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는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무능, 초동대처 실패,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민망할 정도의 군기강 해이에 대해 국민은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장관 해임,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6월 24일 국방위에서 한나라당은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을 30분 만에 졸속으로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천안함특위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결의안은 대북 규탄 결의안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결의안이어야 합니다. 야 4당이 제출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정조사와 공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아닙니다. 원안에 반대합니다.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 결의안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의 어뢰 공격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명시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합리적 의문의 여지 없이 확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군은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사고 발생 시각부터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스스로 TOD 동영상 은폐를 승인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확인된 사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기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설명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어뢰 흡착물의 어떤 점이 폭발의 증거라는 것인지 과학적 설명조차 과학자들의 반론이 제기될 때마다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기하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천안함특위의 임무였습니다.

국방부의 최종 발표도 나오지 않고 7월 중순이 되어야만 고작 사건 발생 시점부터 1.5초간의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는 상황에서 당연히 천안함특위의 활동시한은 연장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고의적 불참과 보이콧으로 실제 국방부에 대한 질의가 가능했던 것은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논리적인 전제로 한 이 결의안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문을 풀어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결의안은 2010년 5월 24일 정부의 제반조치를 지지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24일 대통령 담화는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는 의도로 확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간 위험천만하고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북풍선거 시도는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한번 후퇴한 남북관계는 아직도 회복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결의안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이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문제를 회부했지만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신중한 해결을 오히려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이후 논의도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한 외교, 실패한 외교의 전형입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의 외교적 실패에 국회도 같이 동조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넷째, 이 결의안은 천안함 사건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어느 나라 국민이냐면서 반역자로 매도했습니다. 유언비어로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고소했습니다. 공포정치를 해 왔습니다.

의문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회의 결의안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민군 합동 조사위원, 연구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에 대해서까지 남발한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여당이 지금 할 일도 국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언론과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검증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일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계속되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상황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형식

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둘째, 수정안 2항은 사건 원인이 특정 세력의 도발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3항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단정한 문구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수정안 4항은 원안의 8항, 즉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대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 원안과 수정안의 표결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방위원회 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 정미경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의문점을 전부 해소하고 난 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듯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수정안을 보십시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문단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과는 달리 민주당은 그리고 수정안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라는 것을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민주당과 일부 의원님들께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부인한다면 국민들께 입장을 밝히십시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왜 아닌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의문점을 전부 해소한 이후에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제가 비로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의문점 때문이라면 오늘 결의안 원안을 찬성하신 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는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충실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의 때를 놓치게 될까 봐 염려해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문점을 전부 해소한 후에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돕는 우방국들과 서방의 선진국들,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의 도구입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님!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대북 규탄 및 결의안 원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유원일·유성엽 의원 외 84인으로부터 제출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77인, 반대 165인, 기권 1인으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70인, 기권 4인으로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황진하·권경석·김광림·김무성·김옥이·김장수·김충환·박진·유정현·정옥임·이해봉·조윤선·조진래 의원 발의)

(16시43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3항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박선영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박선영 의원입니다.

황진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6·25전쟁 60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으로 우리 국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16개 참전국 등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핵 폐기 및 대남 도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그치지 않는 대남 도발의 해결은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당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에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에서 희생된 국군 및 유엔군 용사들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 중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 기치하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참전국과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등 5개 의료지원국 그리고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경제적 지원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60년 전 남침을 감행한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며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외의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화에도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으로서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시49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안한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사회는 지금도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의 아동 성폭력이 난무하여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성폭력 범죄 예방 대책은 여전히 여러 한계와 과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증을 갖고 국민적 공분을 진정시킬 극약 처방을 경쟁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차분하게 사회안전망 곳곳을 점검하고 이미 도입된 제도가 예산이 없어 창고에 잠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통하여 제대로 된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동 결의안을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들이 안전 무방비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또한 학교의 365일 안전 체계를 재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가 지역사회의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안 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관점을 철저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문 인력과 사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무분별한 음란물이 판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교육의 질적 개선과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성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상의 주문사항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실하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충실히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김수철 사건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 안전 보장 대책을 내놓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 대책이 그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관련 예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그러면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만장일치입니다.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이계진·박병석·류근찬·노철래·송훈석·유성엽·최연희 의원 외 277인 발의)

(16시5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대리 박병석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의 협력을 촉구하고, IO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경기시설 건립 및 재정 확보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2002년 월드컵, 2010년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현재 평창은 IOC 집행위원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 도시로 선정되어 공식적으로 국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은 강원도 평창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그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의사진행의 건

(16시57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던 권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야 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참으로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특위에서 두 달 전에 합의 처리된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 특위는 왜 만들었는지, 또 여야 마찬가지로 지도부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이런 사태를 계속 용인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지방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 체제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8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작년 8월 15일에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부터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특별법의 성안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특별법은 작년 9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서 국회 특위에서 철저하고도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금년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특위 활동 시한이 4월로 마감이 됨에 따라서 양당 원내대표가 4월 처리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률안입니다.

이 특별법은 시·군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과 원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 규모의 행정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률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을 이룬 창원시의 경우에는 2010년 7월 1일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통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그리고 불편, 추가 부담, 108만 대도시의 기능에 부합되는 조직체계의 미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범 이후에 겪게 될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금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여야 특위 위원들이 합의하여 성안한 이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합의사항에 전면 배치됨은 물론이고 창원시의 정상적 출범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소관 특위에서 의결이 되었고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특별법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국민과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특히 통합 창원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의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 수정이나 체계 보완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골격을 바꾸려 하고 있고 야당의 지도부가 월권적 간섭에 치중함으로써 정상적 상임위 운영을 우리 법사위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본 특별법을 처리하고 양당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까지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신영수·황우여·이상민·조배숙·정두언·김세연·김영우·손범규·주광덕 의원 발의)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김혜성·노철래·정하균·신건·김정·송영선·김태원·윤상일·정영희·김을동 의원 발의)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강창일·이성헌·박선숙·문학진·박주선·안규백·김우남·송민순·이미경·김재균·우윤근 의원 발의)
10. **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두언·이해봉·정수성·임영호·이재선·김유정·김효재·강기갑·이인기 의원 발의)

(17시02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두아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두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의원 및 박민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고,

둘째,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으려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원고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 의무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도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는 당사자주의를 고려하여 임의적인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보육 및 교육지원 외에 의료지원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이송된 수형자에게 외국에서 받은 감형과 같은 제도를 형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조문체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두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7시1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李珍福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하는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한 세 가지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시13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신지호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소남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둘째, 자동차 등의 터널 운행 시 점등의무 강화, 공동위험행위 주도 금지 등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는 강화하되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

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 소방기술자의 이중 취업 금지를 완화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소방시설업자의 권익 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태원 의원, 이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상습 침수지역과 같은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신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시1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전혜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명수 의원안, 이경재 의원안, 2건의 정부 제출안, 총 4건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 절차를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이용되는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7시2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김우남 농림식품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마련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신성범 의원, 여상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 일부 수정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경우 그 피해자가 농어업인인 경우 현실 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 취업가능 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주거·보건의료·복지 등 농어업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업인에 대한 영양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서갑원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종료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록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2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7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강성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5건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하여 그동안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양벌규정을 개선하고 과태료 불복 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수출입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강성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서상기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만장일치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7시29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0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정진섭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달곤 의원, 안효대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정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신성범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충조·김희철·유정현·김소남·김유정·이범래·정수성·원유철·권경석·이인기·정갑윤·유성엽·안홍준·이한성·신영수 의원 발의)

(17시32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이정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정선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법에 따라 법원의 열람 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아 현행법에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곽정숙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해 놨는데요.)

하셨어요?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했어요?

잠깐 투표를……

24항임을……

(○곽정숙 의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접수가 안 돼서요. 나중의 24항인 것 같습니다.

(○곽정숙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7시3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2항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서갑원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서갑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서갑원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인에서 200인으로, 시·도당은 10인에서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치자금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대통령경선후보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잔여재산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였고,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4.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발의)(박민식·김태원·김낙성·이시종·김영우·이진복·원희룡·홍장표·정영희·김무성·김종률·안형환·홍정욱·손범규·김충조·신지호·안상수·여상규·현기환·이윤석·이종혁·정양석·이범래·허범도·허원제·박보환·이인기·권영진·최철국·박준선·조배숙 의원 발의)

(17시3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4항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두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두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입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는 동 법안의 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하였고,

둘째,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서 상습성 요건을 삭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초범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넷째, 약물치료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치료명령을 결정에서 판결로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여섯째,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일곱째, 약물치료 시기를 수용 시에서 출소 2개월 전으로 변경하였고,

여덟째,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두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도입을 위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상습적 성범죄자나 성도착자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하나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오히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여지가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비이성적 성욕을 가진 극소수의 괴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85%에 달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기도 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거나 친절한 사람이기도 하며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족이기도 합니다.

작은 성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강력 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학적 거세 방안은 성폭력을 사회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가해자 개인의 범죄, 성기 중심 강간 범죄로 인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는 가해자의 성기 발기 억제나 성욕 저하만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해외에서 성범죄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은 남성 피임용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여성호르몬제입니다. 투여 기간 동안의 억제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약물 투여를 중단할 경우 재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재범 방지에는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일반인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대책이 성범죄자의 위험성만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과 지역사회와의 격리에만 중점을 둔다면 이들은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어 더욱 흉악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재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감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인격·성격 장애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등 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간 및 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질화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증명된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자발찌 도입, 양형 기준 상향 조정, 범죄자 신상 공개 등 아동 성폭력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와중에도 성폭력 범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아 가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획기적인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성폭력 범죄의 원인을 특별한 범죄자의 비이성적인 성욕으로 보는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에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저는 본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8년 9월에 대표발의했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법안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니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그것도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는데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유럽에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 도입된 이래 심각한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다거나 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독일,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또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그 효과도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법, 즉 약물치료 방법을 도입하는 국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 5명의 우리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분노만 표출하고 갑론을박 회의만 할 것입니까?

작년 조두순 사건에 이어 올해 초 김길태 사건 그리고 김수철 사건, 바로 어제 알려진 동대문에서 일어난 초등생 성폭력 사건 등 이제 아동 성폭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들입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고 또 전자발찌를 채워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약물치료법이 아동 성폭력범을 100% 근절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850만 우리 어린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으로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하여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서 대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아동 성폭력 범죄가 흉포하고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오늘은 모든 분들이 찬성 대열에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추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3인, 기권 30인으로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49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5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29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소남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소남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소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전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의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김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황진하 의원님, 하십시오.

정두언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5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유재중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인증업무는 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인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외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며,

넷째, 평가 결과 및 인증 등급을 활용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그 외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을 할 때 각 단체별로 각각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 수를 동수로 하는 것 등 두 가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7시59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2항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8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활동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8시00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o 5분자유발언

(18시01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 참전유공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은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6·25전쟁은 대한민국 국민 3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8만 7000여 명이 북에 납치됐거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군 13만 7000여 명, 유엔군 4만여 명이 전사했으며 한국군·유엔군 4만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김일성 집단의 6·25 남침은 우리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으나 지금은 2만 달러로 57년 전보다 28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근 50년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 자유 그리고 이런 월드컵 승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전쟁 끝난 지 50년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은 9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원의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37만 116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만 4344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지금 평균연령 80.3세에 접어든 참전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44.6%는 주요 수입원이 '자녀가 주는 용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빈층으로 떨어진 유공자들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80대 참전유공자 어른께서 태극무공훈장을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한 행사장에 갔다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저런 훈장을 받았겠느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 지금은 그 훈장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배가 고파도,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밥을 굶으며 그냥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들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빈곤의 대물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전유공자들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유공자는 20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은 몇천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참전수당을 현실화해 주고 지친 몸을 눕힐 요양시설조차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는 최소한 임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적어도 매월 20만 원 정도는 인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유공자입니다마는 내용 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복지나 요양, 저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태평양전쟁유족회·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보훈 가족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훈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보훈의료 서비스의 향상, 사회적 예우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산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 갑 민주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오늘 10개월 동안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은 5000만 국민의 승리이자 원칙과 정도의 승리입니다.

또한 국가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오기정치,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날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천명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세종시 설치법 제정 및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등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과 세종시 청사 건설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집행률이 1.3%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 건설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시청사 건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원안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수정안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세종시 수정 추진론자 정운찬 총리를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에 앞장선 정운찬 총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장본인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대결, 지방과 지방 간의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에 올인했던 정운찬 총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론자입니다. 세종시 수정론자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즉각 해임하고 세종시기획단, 민관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기 위해 존재했던 행복도시건설청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열을 올린 건설청 관계자들도 문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회 운영의 근본정신인 여야 합의 정신을 깨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 무책임한 행동이며 편가르기 정치를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 오기의 정치를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입니다. 오기의 정치는 오늘부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양승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평 을 홍영표 의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 타임오프 관련법이 강행 처리되었고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일을 어기면서 타임오프 사용한도를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법 시행을 불과 27일 앞둔 6월 3일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

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 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사용 대상자와 대상의 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법 제24조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원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률 우위의 법칙을 위배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뉴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부의 매뉴얼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단체협약은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 노조법 전임자 관련 조항의 시행은 노조법 부칙 제1조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관련 및 대상 업무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이 명백한 것이며 2010년 7월 1일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대상 업무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이 제24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셋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법률에 위임이나 근거가 없이 법률조항에 반하는 인원 수 제한을 시행령과 고시에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법성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결정은 인원 수에 한정된 것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인력 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근무시간 중 전임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타임오프 시간의 활용권리나 방법은 노동조합의 재량권임이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 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지역적 분산, 교대제 형태 등의 특수근무형태, 종업원 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단일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이유로 전국에 분포된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묶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의 전국적 분포와 주야 맞교대와 같은 특수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타임오프 한도로 전임자 수를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노조 규모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노조가 밀집해 있는 중소 규모 구간은 세분화하였고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구간을 넓게 선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였다는 것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게 배정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불개입 원칙을 깨고 노사협상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노사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매뉴얼로 전임자와 관련한 노사협상을 강제하면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일방적인 해석을 악용하여 전임자 관련 단협안에 대해 개악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7월 1일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섭장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전임자 관련 노사협상이 노동부 매뉴얼과 다르게 합의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부가 타임오프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노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시장경제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용부'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따라서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사자율로 단체협상이 진행되도록 더 이상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속기록에는 기록이 됩니다만 방송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던 세종시 문제가 원안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에 끝까지 집착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민심에 머리 숙이는 척하고 뒤에서는 민심을 뒤집는 책동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물량 살포와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확실히 사망선고를 내렸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표결절차를 통해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는 종료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다수 힘을 빌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세종시 수정안을 발의했을 때처럼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원안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시총리' '특임총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정운찬 총리는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제한 당사자로서 지난 9개월 동안 엄청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운찬 총리는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핵심 공직자들도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입니다.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공정이 4분의 1이나 진척되었고, 지금까지 약 5조 6000억이 투입된 국책사업입니다.

이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대한민국도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5개~7개로 나누어진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정안을 추진했던 세종시기획단은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9부 2처 2청에 대한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정부청사 및 시청사 발주계획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특별법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합니

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세종시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민심의 물결에 굴복했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민심을 외면한 정권의 종말은 어떠했는지 역사는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다시 한번 민심의 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기 바라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세종시가 보다 더 잘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임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의 경주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한전과 한수원을 서로 통합하는 방안이 용역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주시민들은 경마장 유치사업, 태권도공원 유치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문화재를 이유로 줄줄이 좌절되자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신라 천년왕도에 국가적 기피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키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주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구속됐으며, 70여 명이 2000여만 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1986년 과기처가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선 이래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 등을 겪으면서 19년간 방폐장 사업이 표류했었는데 경주의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국가 숙원사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지난 정부 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여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과는 원천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책사항이지만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된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서 양사를 통합한다면 한수원이 한전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 정부의 말을 믿고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 정부의 과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정부에도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수원 본사 이전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시민들은 벌써부터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지 않으면 방폐장 건설사업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대표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한수원 본사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본 의원의 고언을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수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홍재형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 또 우리 이용희 전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자유선진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하균 의

원님, 정영희 의원님, 김을동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님,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고승덕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박　진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5인)

강석호	권성동	김효재	성윤환
신영수	여상규	윤　영	이인제
이진삼	정갑윤	정해걸	조순형
주호영	최병국	허태열	

기권 의원(18인)

강길부	강용석	김금래	김기현
김성회	박선영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유기준	이사철	이종구	이철우
정희수	최연희		

(이강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8인, 기권 의원 18인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10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164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학용 심대평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영호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장선 정진석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기권 의원(6인)

김세연 박민식 유성엽 정의화
조전혁 황진하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77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유성엽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반대 의원(16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동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백성운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166인, 기권 의원 없음)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16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0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기권 의원(3인)

유성엽 이정현 정장선

(김옥이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4인, 기권 의원 3인임)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조승수 홍영표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정의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0인, 찬성 의원 210인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동영 정두언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강용석 구상찬 김영록 현기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동영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조경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동영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조경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동영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조경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동영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유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5인, 기권 의원 없음)

○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미경 조경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장선

(조윤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0인, 기권 의원 1인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구상찬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병석

기권 의원(1인)

정범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범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애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용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조승수

(전혜숙 의원 착오로 김희철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80인, 기권 의원 없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은수

(서갑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7인, 찬성 의원 186인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범구

(김영선·정의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6인, 찬성 의원 185인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종걸 최영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송광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윤선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조승수

기권 의원(1인)

이석현

(이해봉·정의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5인, 찬성 의원 183인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1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곽정숙 권선택 권영진 조승수
황영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진표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반대 의원(2인)

곽정숙 황영철

기권 의원(1인)

김정권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3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서상기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조경태 조영택 조윤선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홍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3인)

강봉균 곽정숙 김상희 김영선
김재균 김창수 변재일 신 건
안민석 장세환 정의화 조승수
최재성

기권 의원(30인)

강용석 강창일 권성동 김영록
김우남 김충조 노영민 박선숙
박영선 백재현 서종표 양승조
원혜영 이강래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화수 정동영 정범구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주광덕 주승용 천정배 최영희
홍영표 홍일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최영희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동영 정두언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성조

(신학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3인, 기권 의원 1인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석현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주광덕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곽정숙

기권 의원(3인)

박영선 이종걸 이춘석

○출석 의원(2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6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22인)

강명순 김낙성 김영록 김을동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박기춘
박지원 양승조 이용희 이한구
임영호 전현희 전혜숙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하균
홍영표 홍재형

○출장 의원(5인)

김성태 이경재 이용경 정병국
진성호

○청가 의원(4인)

강승규 송영선 신낙균 정몽준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안 병 옥
의 사 국 장 이 종 후

○출석 국무위원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보건복지부장관	전 재 희
환 경 부 장 관	이 만 의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출석 정부위원

법 무 부 차 관	황 희 철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 승 규
여성가족부차관	김 교 식
방송통신위원장	최 시 중
금 융 위 원 장	진 동 수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이정선	한나라당	2010. 6. 16
	강성종	민주당	
기획재정	강길부	한나라당	2010. 6. 17
	이용섭	민주당	
지식경제	김재경	한나라당	
	조경태	민주당	
법제사법	주성영	한나라당	2010. 6. 18
	박영선	민주당	
농림수산식품	강석호	한나라당	
	김우남	민주당	
정무	이사철	한나라당	2010. 6. 21
	우제창	민주당	
국방	김동성	한나라당	
	신학용	민주당	
행정안전	김정권	한나라당	
	백원우	민주당	
환경노동	신영수	한나라당	
	홍영표	민주당	
외교통상통일	유기준	한나라당	2010. 6. 22
	김동철	민주당	
정보	황진하	한나라당	2010. 6. 24
	최재성	민주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류근찬	권선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0. 6. 22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특별	전혜숙	최문순	민주당	2010. 6. 22

○의안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7 이석현·강기정·김재윤·김효석·송민순·신건·안민석·양승조·이종걸·전혜숙·조경태·최규식·최재성 의원 발의)

6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7 이석현·강기정·김동철·김재윤·김효석·신건·안민석·양승조·전혜숙·조경태·최재성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0. 6. 17 홍재형·문희상·최영희·양승조·박선숙·김재윤·김재균·이찬열·원혜영·변재일·김성곤·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7 이석현·강기정·김재윤·김효석·박선숙·송민순·신건·신학용·안민석·양승조·이종걸·전혜숙·조경태·최재성 의원 발의)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0. 6. 17 박영선·김동철·양승조·이춘석·최문순·박은수·정동영·박선숙·유선호·박주선·이성남 의원 발의)

6월 18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0. 6. 17 홍재형·문희상·최영희·양승조·박선숙·김재윤·김재균·이찬열·원혜영·변재일·김성곤·백재현 의원 발의)

6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천정배·문학진·최문순·김재윤·이종걸·조영택·안민석·장세환·이석현·

유선호・신건・박은수・주승용・이춘석・최철국・전병헌・강창일・안규백・김영진・김부겸・조승수・신학용・박주선・이정희・유원일・조배숙・정동영・박영선・김진애・양승조・서갑원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유성엽・김재윤・강창일・김성수・조경태・심대평・안형환・김영진・백재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박영선・유선호・유성엽・김재윤・강창일・김성수・조경태・심대평・안형환・김영진・이성헌・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김성수・김재윤・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김성수・김재윤・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이춘석・박은수・최철국・유선호・양승조・안규백・조정식・전현희・노영민・장세환・최규성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김성수・김재윤・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이춘석・박은수・최철국・유선호・양승조・안규백・조정식・전현희・노영민・장세환・최규성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김성수・김재윤・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우제창・유성엽・김재윤・김성수・조경태・심대평・안형환・김영진・김효재・신상진・백재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이종걸・양승조・안민석・조영택・이석현・최문순・정동영・강창일・안규백・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이춘석・박은수・최철국・유선호・양승조・안규백・조정식・전현희・노영민・장세환・최규성 의원 발의)

6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조원진・강성천・박순자・박준선・유재중・이사철・이명규・이인기・정해걸・정희수 의원 발의)

6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6. 21 윤영・장광근・윤석용・정희수・안효대・김낙성・권경석・김동철・노철래・장제원 의원 발의)

6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0. 6. 21 박지원・김동철・김재균・김재윤・김진표・박기춘・박영선・박주선・백재현・오제세・원혜영・유성엽・이미경・이찬열・전혜숙・조영택・최규성・홍영표 의원 발의)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1 박은수・이미경・최철국・곽정숙・홍영표・최영희・김재윤・조승수・유원일・이춘석 의원 발의)

금양98호 희생자 의사자 인정 촉구 결의안

(2010. 6. 21 조윤선・김정권・정양석・정몽준・구상찬・이화수・조전혁・차명진・권영진・

권영세·정미경·이진복·강석호·정해걸·이한성·조진형·허원제·강승규·신건·이성남·허천·유정복·김성조·김형오·이주영·이은재·노철래·정하균·최연희·김장수·이두아·안경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

(2010. 6. 21 송민순·강기정·강봉균·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성수·김성순·김세연·김영진·김영환·김유정·김장수·김재균·김재윤·김춘진·김효석·김효재·노영민·문학진·박은수·박주선·박준선·백재현·서종표·송훈석·신건·신낙균·신상진·신학용·안규백·안민석·안상수·양승조·오제세·우윤근·우제창·원혜영·유선호·유성엽·이낙연·이미경·이석현·이성남·이용경·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걸·이찬열·장세환·전병헌·전현희·전혜숙·정갑윤·정세균·정양석·정의화·정장선·조경태·조배숙·최규성·최규식·최문순·최재성·최철국·추미애·홍영표·홍재형 의원 발의)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2010. 6. 21 황진하·권경석·김광림·김무성·김옥이·김장수·김충환·박진·유정현·정옥임·이해봉·조윤선·조진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합동참모의장후보자(한민구) 인사청문요청안

(2010. 6. 21 대통령 제출)

6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2 유정현·김소남·임동규·노철래·황영철·김선동·권성동·조문환·진영·권영세·김성회·박준선·김성조·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2 유정현·김소남·임동규·노철래·황영철·김선동·권성동·조문환·진영·권영세·김성회·박준선·김성조·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2010. 6. 22 정하균·강명순·박상은·양승조·이낙연·이애주·이춘식·주승용·최영희·추미애 의원 발의)

6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조문환·박준선·유정현·정옥임·차명진·김소남·원희목·이두아·진수희·주광덕·김용태·이애주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조문환·박준선·유정현·김성조·김선동·배은희·정옥임·차명진·김소남·원희목·진수희·이두아·주광덕·김용태·김성식·송영선·이애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최문순·전혜숙·권영길·김진표·이미경·정장선·이찬열·조영택·박영선·신낙균·김재윤·이종걸·최재성·홍영표·원혜영·백재현 의원 발의)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신낙균·송민순·박은수·이찬열·김재균·김재윤·조승수·이성남·이미경·김상희·추미애·박영선·신학용·이용섭·이종걸·전혜숙·강성종·김유정·곽정숙·이경재·김춘진·김정권·조영택·김성곤·유선호·유원일·박상천·박주선·원혜영·김영록·안규백·박기춘·김동철·최영희·최인기·양승조·김효석·오제세·구상찬·문학진·최문순·송훈석·정태근 의원 발의)

6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박주선·김동철·안민석·조영택·박영선·김부겸·김영진·오제세·전병헌·홍영표·양승조·김재윤·이미경·정동영·이종걸·박기춘·김유정·주승용·김진표·김진애·천정배·문학진·김성곤·이낙연·박은수·이찬열·김재균 의원 발의)

6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김충환·김옥이·유성엽·강석호·유기준·공성진·김효재·황우여·황진하·임해규·김용구·전여옥 의원 발의)

6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0. 6. 23 이재선·변웅전·이상민·류근찬·이명수·김용구·강길부·임영호·조정식·김창수·심대평 의원 발의)

6월 24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2010. 6. 23 국방위원장 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이석현·김재윤·김효석·박선숙·신건·신학용·안민석·양승조·전혜숙·조경태·문학진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황우여·손숙미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정갑윤·정희수·김세연·이춘식·유정현·정해걸·권영진·박준선·황영철·김태원·여상규·이사철·이은재·임동규·김소남·최구식·신성범·송훈석·배은희·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이석현·강기정·양승조·최재성·조경태·김재윤·김동철·최규식·김효석·안민석·이종걸·전혜숙·송민순·신건·박선숙·문학진 의원 발의)

6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이석현·김재윤·김효석·박선숙·신건·송민순·신학용·안민석·양승조·전혜숙·조경태·조배숙·문학진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조배숙·오제세·김동철·이강래·강용석·김영록·유선호·양승조·김우남·서종표·전현희·정해걸·박선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신지호·권영진·이명수·신상진·이해봉·이성헌·이정선·황우여·강성종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이명수·송영선·정희수·유성엽·황우여·김을동·김태원·김용구·김창수·임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심대평·김창수·이명수·김성수·박상은·유성엽·권경석·김우남·김장수·유승민·권선택·김학송·김효재·김정·김옥이·이재선 의원 발의)

6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원희룡·유정현·손숙미·김성수 의원 발의)

6월 2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신학용·이찬열·문학진·강창일·유원일·박선숙·장세환·노영민·이강래·강기정·조영택·안규백·서종표 의원 발의)

6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10. 6. 25 송훈석·김우남·이한성·이인기·정희수·정해걸·정갑윤·이화수·김낙성·이윤석·이사철 의원 발의)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0. 6. 25 서상기·손숙미·이종혁·원희목·조원진·조진래·박순자·김정권·이명규·박종근·배은희·이두아·박보환 의원 발의)

6월 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6. 25 이사철·송훈석·박준선·강석호·현경병·고승덕·조원진·김금래·임동규·이은재 의원 발의)

6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

(2010. 6. 25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5 김창수·권선택·김낙성·김용구·류근찬·박선영·심대평·이명수·이재선·이진삼·임영호 의원 발의)

6월 28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강성천·강명순·김금래·김성태·김장수·남경필·박준선·안효대·원희목·이정선·임동규·정미경·정옥임·조원진·홍재형·황영철 의원 발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조원진·권경석·권영진·김태원·김효재·박종근·이사철·이명규·이정선·정해걸·정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오제세·백재현·임두성·김영록·유성엽·김성곤·이종걸·김용구·김효석·강성종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오제세·백재현·임두성·김영록·유성엽·김성곤·김용구·안민석·김효석·강성종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윤영·장광근·윤석용·정희수·안효대·김낙성·권경석·김동철·노철래·장제원 의원 발의)

6월 2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김기현·박은수·공성진·이한성·홍사덕·김소남·유기준·이해봉·김재윤·현경병·안홍준·황우여·이명수·유성엽·임영호·김성태·정병국 의원 발의)

6월 2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2010. 6. 28 정부 제출)

6월 2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김금래·김세연·박대해·신성범·손숙미·유재중·이사철·이은재·이춘식·임동규·임두성·최구식 의원 발의)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地域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오제세·임두성·김영록·유성엽·김성곤·이종걸·김용구·안민석·김효석·강성종 의원발의)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정무위원장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0. 6.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0. 6. 2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4. 29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9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0. 6. 29 의장 제의)

6월 30일(1일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0. 6. 29 의장 제의)

○의안 심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혜성·노철래·정하균·신건·김정·송영선·김태원·윤상일·정영희·김을동 의원 발의)

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 이명수·정두언·이해봉·정수성·임영호·이재선·김유정·김효재·강기갑·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2010. 4. 27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유성엽 의원 외 92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3 이주영·이한성·신영수·황우여·이상민·조배숙·정두언·김세연·김영우·손범규·주광덕 의원 발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0. 4. 5 신낙균·강창일·이성헌 박선숙·문학진·박주선·안규백·김우남·송민순·이미경·김재균·우윤근 발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발의)

(2008. 9. 8 박민식·김태원·김낙성·이시종·김영우·이진복·원희룡·홍장표·정영희·김무성·김종률·안형환·홍정욱·손범규·김충조·신지호·안상수·여상규·현기환·이윤석·이종혁·정양석·이범래·허범도·허원제·박보환·이인기·권영진·최철국·박준선·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박민식·김금래·김성태·신성범·안효대·이진복·이한성·전현희·조윤선·황영철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9 박영선·양승조·송영길·송민순·강창일·최영희·권선택·이춘석·이성남·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3건 정무위원장 보고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2010. 6. 21 황진하·권경석·김광림·김무성·김옥이·김장수·김충환·박진·유정현·정옥임·이해봉·조윤선·조진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8. 12. 29 정부 제출)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9. 12. 29 정부 제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정부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2008. 7. 3 정하균·박대해·노철래·김태원·이한성·김을동·양정례·박종근·김소남·신상진·이진삼·김세연·박종희·유성엽·김희철·정양석·이성헌·윤석용·강기정·김재윤·박상돈·곽정숙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08. 7. 7 김정권·권경석·정두언·이한성·한선교·안경률·김희철·송민순·양정례·이성헌·김재경·김효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8. 7. 16 임동규·유기준·이한성·양정례·유성엽·정양석·안상수·윤석용·정하균·강석호·박대해·이진삼·황우여·김영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8. 6. 19 김소남·심재철·임두성·원희목·이해봉·안상수·윤석용·고승덕·장광근·배은희·손숙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8. 7. 23 임동규·김정권·유성엽·이용섭·이진삼·안상수·이한성·조정식·박보환·김세연·구본철·김효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5 최규식·양승조·최규성·배영식·안상수·김효석·박기춘·이화수·안홍준·김재균·김희철·강성천·오제세·이명수·이경재·장세환·김성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09. 1. 16 장제원·이한성·임동규·정영희·안상수·정해걸·김세연·성윤환·이화수·이춘식·김영우·원희룡·박대해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우윤근·강창일·이윤석·강기정·김영록·송민순·우제창·주승용·이춘석·최철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박순자·송민순·양승조·김우남·김영진·이시종·안상수·유기준·김성수·강석호·김재윤·김소남·안효대·이인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09. 3. 13 박대해·노철래·고승덕·김성조·김을동·홍사덕·김소남·양정례·유승민·이화수·김정훈·임영호·김성수·정영희·신상진·김효재·박준선·김재윤·유재중·남경필·황우여·송영길·조원진·정희수·이한성·이윤성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09. 7. 28 윤석용·정병국·강석호·원희목·박은수·이인기·정해걸·이한성·안홍준·김성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9. 6. 2 김소남·이한성·이해봉·정갑윤·안효대·안상수·강성천·황우여·임두성·손숙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9. 8. 4 주승용·이시종·이범관·우윤근·노영민·이윤석·주광덕·홍일표·우제창·김성곤·김재균·강창일·김영진·김영록·최영희·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

이춘석·김성태·정병국·김충환·허태열·강기정·김재윤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6. 30 박상돈·권선택·김낙성·김성곤·김창수·심대평·이명수·이상민·이정희·주승용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09. 8. 3 장제원·김정권·송영선·신학용·신영수·이성헌·유성엽·홍일표·정병국·김성태·이명수·임영호·박민식·손범규·신성범·이시종·심대평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9. 8. 19 허태열·송영선·임두성·이성헌·손범규·신성범·이시종·이해봉·한선교·김무성·조원진·김영선·최연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2009. 7. 13 신지호·강성천·강석호·여상규·이범래·박보환·나성린·배은희·안효대·김동성·이은재·이두아·이한성·조전혁·안홍준·임동규·이성헌·정옥임·차명진·신상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7. 31 임두성·박종근·이성헌·여상규·손범규·이해봉·김무성·김성수·윤영·이경재·손숙미·윤석용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 6. 26 유정현·신학용·원희목·조윤선·정병국·신영수·한선교·강석호·유성엽·고승덕·신성범·홍정욱·안효대·심재철·노철래·나성린·김성태·이인기·권영진·김성회·조진형·박종근·신지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09. 5. 18 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이정현·박기춘·이성헌·강성천·신영수·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9. 8. 26 안상수·김영선·정미경·안효대·황영철·손범규·신지호·김성곤·신성범·김정훈·이명수·황우여·송영선·이한성·황진하·박대해·김성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2 권경석·이정현·이명규·정두언·신성범·김성조·정갑윤·김정권·조진래·유정현·김태원·신지호·김소남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 22 정부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1 정부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09. 1. 8 김태원·손범규·원희룡·정영희·이한성·한선교·유성엽·김효재·김성수·신상진·김성곤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9. 6. 5 이윤석·송민순·송훈석·강창일·김희철·강운태·송영길·유성엽·노철래·정갑윤·이춘석·김부겸·박종희 의원 발의)

(이상 2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3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 20 정부 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08. 1. 6 이경재·성윤환·구본철·김무성·김금래·이정현·한선교·나경원·강성천·이종걸·윤영·정진섭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31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27 정부 제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 22 황영철·유기준·이해봉·권영진·신성범·김우남·이한성·이두아·유성엽·김성수·이성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 28 심재철·강명순·김소남·배은희·손숙미·신상진·안홍준·이정선·이한성·임동규·정옥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0. 4. 9 박은수·최철국·백원우·최문순·전혜숙·양승조·김재균·김영록·최영희·이미경·우윤근·김상희·곽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31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2008. 9. 29 고흥길·김을동·이경재·유성엽·우제창·김정훈·이인기·나경원·정영희·정진섭·김태원·홍정욱·이화수·김충환·강석호·나성린·권영진·양정례·안상수·홍일표·서상기·이성헌·김옥이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3. 6 임동규·안경률·원희목·김태환·이명규·강석호·손범규·양정례·박순자·손숙미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10. 27 강창일·김우남·양승조·박영아·이종걸·이시종·조승수·장세환·박선숙·김재균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08. 7. 7 김정권·정두언·한선교·김희철·송민순·양정례·이성헌·김재경·최철국·김효재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9. 3. 26 김재윤·강성천·강창일·김상희·김우남·김성순·김영진·김재균·김종률·박은수·안민석·양승조·우제창·유원일·이광재·이미경·이용경·이용섭·김성수·홍희덕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8. 11 이상민·이재선·김용구·김창수·박상돈·임영호·심대평·변웅전·이낙연·권선택·김재윤·이명수·이화수·이사철·이종걸·이춘석·주승용·이시종·이주영·원혜영·최영희·류근찬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 박대해·홍희덕·강성천·유재중·권영세·김금래·박종근·김을동·이윤석·노철래·김세연·신낙균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2 이상민·주승용·권선택·임영호·김창수·박상돈·이춘석·이명수·김용구·이사철·이재선·이주영·최영희·류근찬·이낙연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9 정부 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10 이화수·김우남·강성천·송훈석·조진형·박순자·정진섭·신상진·박민식·이명규·정해걸·정갑윤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0. 3. 23 정부 제출)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08. 11. 7 이달곤·정희수·김춘진·신성범·백성운·홍일표·이광재·김효재·김정권·

김을동 의원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6 안효대·정갑윤·윤상현·이한성·임영호·김장수·신영수·강길부·양정례·김세연 의원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3. 17 강창일·이용섭·오제세·김우남·박기춘·주승용·김영진·강기정·우윤근·문학진·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3. 24 김태원·김충조·김희철·유정현·김소남·김유정·이범래·정수성·원유철·권경석·이인기·정갑윤·유성엽·안홍준·이한성·신영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2010. 3. 22 이계진·박병석·류근찬·노철래·송훈석·유성엽·최연희 의원 외 277인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파주 교하3지구 조기 보상에 관한 청원

(2010. 6. 22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480-13 허염 외 613인으로부터 황진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6. 22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안진걸로부터 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6. 22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안진걸로부터 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2010. 6.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일빌딩 3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 장명숙 외 4인으로부터 박은수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2010. 6. 22 임동규 의원 등 66인 제출)

○의견서 제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 의견

(2010. 6. 23 대법원장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질문서

(2010. 6. 22 김춘진 의원 제출)

금융감독기관 직무감사 관련 질문서

(2010. 6. 22 주성영 의원 제출)

금융감독기관 직무감사 및 관리 관련 질문서(2건)

(이상 2건 2010. 6. 25 주성영 의원 제출)

수인선 신설 소래고가 경간폭 확장을 위한 예산 증액요청 관련 질문서

(2010. 6. 25 이윤성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6. 18 정부 제출)

정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3건)

영등포 아동 성폭력사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5건 2010. 6. 25 정부 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2009년 추진실적 및 2010년 시행계획

(2010. 6. 22 정부 제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